

전주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8999 판결 [구상금 청구이의의 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899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가단13177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문옥, 박정혁, 양선화, 유병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도현, 서한샘

변론종결 2022. 6. 15.

판결선고 2022. 8. 17.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가단1317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8가소18976호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김범준, 판사 신태광